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대상물질 확대

앞으로 석면류(백석면 제외),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밝혔다.

※ 로테르담협약: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출시 자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대편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수입의사를 확인하여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04. 2. 24 발효, 우리나라 '03. 8월 기준)

금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지난 2004년 9월의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명확한 물질로 화학물질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를 따라야 하는 유해화학물질('06년 현재, 산업용 화학물질은 11종)

품목확대와 함께 기준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만 담당하던 수출승인업무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출승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하였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6종이 추가되나, 그간에 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산업계와 관련된 물질은 사에틸납과 사메틸납 2개 물질에 불과하여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에틸납, 사메틸납: 독성이 강하여 노출시 두통, 피로, 불면증, 설사 등이 발생하고, 중독시에는 과홍분성, 저혈압, 저체온, 서맥(徐脈), 환각, 혼수 등을 유발함.

앞으로 환경부는 관련 산업계의 유해화학물질 수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입국에 대한 신속한 수입의사 확인과 수출통보서 작성요령 홍보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출업무추진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 수변지역 토지매수로 수변생태벨트 10만평 조성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주민으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토지매수한 토지 중에서 10만평을 수변녹지로 조성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 1,938억원을 투입하여 '00년도부터 '05년도까지 6년간 수변구역 내 공장·축사·음식점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토지 142만평을 매입하였고, 매수토지 중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토지 114만평을 제외한 28만평 중 약 36%인 10만평을 수변녹지로 조성하였다.

금년도에도 '04년 이후 '05년 9월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해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수질에 영향이 큰 하천인접지역 및 건물철거지역 등 11만평에 대해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06년도 말까지추진 할 계획이다.

나머지 7만평과 금년도에 매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07년도에 수변녹지를 조성 할 예정이다.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은 수변지역의 공장·축사 등 오염원이 입지한 토지를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 지역을 수변녹지로 조성함으로써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저감시켜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수변녹지대조성사업은 훼손지역의 생태복원을 촉진하고, 수원함양과 하천수질의 자연정화 등 수질개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자생식물 식재 및 습지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수변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수변녹지대가 조성되면 동 지역에 유입되는 농업배수 등 비점오염원의 질소, 인이 저감(질소: 20~50%, 인: 33~55%) 되며, 수변생태계 형성으로 양서·파충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복원되고, 수원 함유량이 높아져 하천유지 용수가 증가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하천경관 개선을 통한 친수공간 확보, 환경교육 및 생태학습 공간 등을 제공하는 부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인접지역 토지를 우선매수 하고 있다.

'05년도의 경우 전체 매수면적 중 수변에 인접한 50m이내 지역이 36%를 차지하였고, 금년도에는 우선매수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주민설득 활동을 벌여 수변인접토지의 매수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향후 토지매수사업의 수계관리 기금내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최소 배정액 규모를 정하는 등 사업비중을 확대하여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한강수계 비점오염물질 유입저감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건설공사 오니 등 5가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현행 해양투기가 허용된 폐기물 14개 품목 중 건설공사 오니·하수도 준설토·정수공사 오니·적토·폐산 및 폐알카리 5개 품목이 제외된다. 또 나머지 해양투기 허용 품목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오니와 하수도 준설물질은 오는 5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정수공사 오니는 내년 1월 1일, 적토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21일부터 건설공사 오니 등 5개 품목을 해양투기 허용품목서 제외하는 등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해양투기 물질 분석방법을

폐기물을 증류수로 씻어 나온 세척수만 분석하는 용출법에서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평가 방법인 함량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항목도 현행 14개에서 유해물질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 등을 추가해 25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동해 병해역에서 어획된 홍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수오니 등은 머리카락, 짐승 털 등을 제거 후 투기토록 하는 한편 폐기물 운반선을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명문화 했다.

이 밖에 폐기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악취방지법 배출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저장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투기 허용품목 축소 및 처리기준 강화로 해양투기량이 연평균 10%인 약 100만 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과는 별도로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량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연간 총 투기허용량 관리를 통해 올해부터 감소세(2005년 993만 톤→2006년 900만 톤)로 전환하고, 오는 2011년에는 지난해 투기량의 50%이하인 400만 톤까지 감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하수오니·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금지토록 하고 육상 폐기물의 육상처리 유도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건교부,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및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006년 2월 13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00세대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될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자연환기설비: 창호외에 외부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 등에 의해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의 설비 / 기계환기설비: 송풍기와 같은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설비장치를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설비)

또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도서관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인 1시간당 36세제곱미터이상, 소매시설 등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1인 1시간당 29세제곱미터이상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물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비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피뢰설비기준을 측면으로 떨어지는 비락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진국제기준에 맞추어 보완하였다.

산업자원부, 청정생산기술로 국내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기반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업자는 '06. 3. 16(목)까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은 '제품설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오염물질을 사전에 저감·제거하는 청정기술의 개발 및 이전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총사업비(380억원)의 34%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국제환경규제 대응 과제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

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06. 1월 발효된 EU의 폐차처리지침(ELV) 및 '06. 7월 발효예정인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등에 대한 대응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서도 '07년 이후 본격화되는 '친환경설계규정(EuP)' 과 '13년 감축의무가 예상되는 '교도 의정서' 등 신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설계규정 대응기반 구축' 및 '육불화항(SF6) 대체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육불화항(SF6): 주로 변압기 등 중전기기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물질로 6대 온실가스중 지구온난화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적인 생산체제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관련 기반조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05. 11~12월 실시한 기술수요조사 및 업종별 청정기술 로드맵에 따라 도출된 청정공정기술,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부산물 재자원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우선 지원하며, 지정과제 이외에도 자유공모 방식으로 환경개선효과 및 자원절감효과가 뛰어난 청정기술을 일부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제조(Remufacturing) 산업 기반구축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무역장벽화되고, 자원 및 에너지 고갈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청정생산기술은 국내산업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회로 삼기 위해 향후 청정생산기술 개발 전략을 국제 산업환경 동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사업 1,213억원 지원개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용자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7%(43억원) 증가한 1,213억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용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시설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분리별 변동금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하는 좋은 조건으로 용자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자금의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과거 소요자금을 100%지원하던 것에서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설비인 용자지원 대상시설에서 국내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동을 저조를 감안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사업자에게는 자금지원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직접대출방식으로 지원하던 소액태양열온수기를 공단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소액태양열온수기 설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천방법을 변경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06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계획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호」(2006. 1. 26)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따른 설치 기준을 통한 신재생전문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환경부·민간환경단체, 환경정책 공동생산하기로 합의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는 지난 2월 9일 한국일보 12층 송현클럽에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민간환경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금번 발족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04. 11월에 민간환경단체들이 참여정부의 환경인식 결여 등을 이유로 '환경비상사국회의'를 결성하고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사퇴한 이래 1년 3개월 만에 정부-민간환경단체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재개한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에 대해 과거 자문위주 역할에서 벗어나 주요 환경정책 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실질적인 정책협의를 거쳐 정책을 공동생산하는 동시에 시행 및 평가 또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민간환경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협의회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책 분야별로 환경부와 민간단체의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민간단체 상호간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등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는 이번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주요 환경정책을 상호 미리 협의하여 수립하고 함께 평가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환경거버넌스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